

2023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9인	재적위원수	8인
------	----	-------	----

1. 일 시 : 2023.1.30.(월) 10시 30분
2. 장 소 : 제1예술관 2층 회의실
3. 위원 출석현황

구분	참석	불참석	참석위원	불참위원
위원	5명	3명	이의철, 이명균, 석정웅, 김관식, 김성준	이혁화, 이희경, 박재현

4. 안건

- 제1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 제2호의 안 : 2022,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심의
- 제3호의 안 : 2023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심의
- 제4호의 안 : 2023회계연도 본 예산(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위원 중 5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 '위원장'이 2023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나. 안건 심의

제1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제안설명을 간사에게 요청하다.
- '간사'가 잉여금의 개념 및 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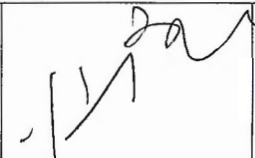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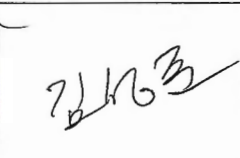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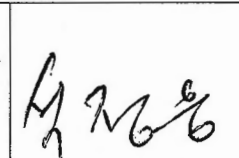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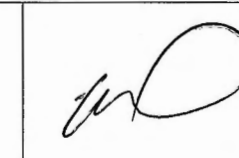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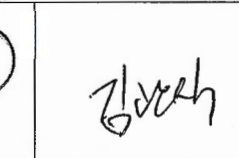
- 토론 및 토론 종결

- [] 의원이 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15억에서 17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다.
- [] 이 작년과 동일하고 회계원칙에 관한 것이니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다.
- [] '이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 위원 동의안에 [] 위원의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호의 안 : 2022,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서명					
----	---	---	---	--	---

- ‘간사’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때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44,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이 30,000천원이며,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48,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은 30,000천원이라고 하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부담한다며 다만, 하반기 법인부담금액이 변동될 때 대학부담금의 변동도 함께 발생한다고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 ’이 법인부담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질문하다.
- ‘간사’가 전입되는 시기는 보통 2월이라고 하다. 참고로, 법인부담금은 12월쯤 법인에서 부담금액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 검토 후 승인하거나 부담금액을 정하여 통보할 수도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다.
- ‘ ’이 2022,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 ’위원의 동의안에 ‘ ’위원의 재청이 있어 ‘ ’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3호의 안 : 2023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3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2023학년도 수업료는 기본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안을 내었고, 다만,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안내가 있어 신·편입생이 있는 전공의 수업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다. 지원대상 학생은 2023학년도신입생 및 편입생이며, 금액은 2017학년도 입학금의 20%인 130,000원이라고 하다. 즉, 신·편입생이 있는 전공은 해당 학년의 등록금에 130,000원을 추가하여 인상을 하는 것이나 기존 재학생들은 해당이 없고, 해당 금액은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이 되기에 학생들의 실납부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다. 다만, 2022학년도에는 선감면을 하였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신청해야만 지원이 나오기에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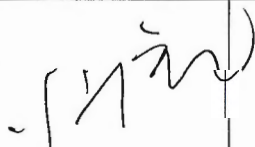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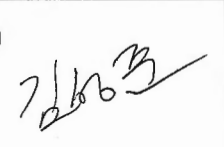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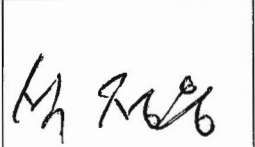


- 토론 및 토론 종결

- ‘ ’위원이 정부 정책상 변동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다.
- ‘ ’이 2023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 ’위원의 동의안에 ‘ ’위원의 재청이 있어 ‘ ’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4호의 안 : 2023회계연도 본 예산(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4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2023회계연도 본 예산(안)의 수입이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의 감소로 작년대비 감소하여 등록금수입만으로는 지출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수 등 일부 지출예산을 삭감하였고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며 2023회계연도 수입총계가 7,787,557천원이고 이중에서 등록금회계가 3,662,981천원, 비등록금회계가 4,124,575천원이라고 하며, 지출은 감소한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과별 예산내역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서 명					
--------	---	---	---	--	---

- 토론 및 토론 종결

- 이 재학인원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예산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학에 부채가 없는 것이라고 하다.
- 위원이 고정부채상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대학내 식당과 커피숍의 재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 여부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출을 책정한 것이라고 하다.
- 이 2023회계연도 본 예산(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의 동의안에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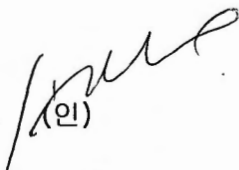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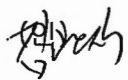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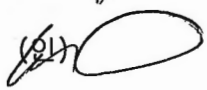
- 제1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2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3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4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3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3. 1. 30.

참석인원	위원장	이 의 철 (인) 	위원	김 관 식 
	위원	석 정 웅 (인) 	위원	김 성 준 (인) 
	위원	이 명 균 (인) 		

작성자 김 광 진 